

# 증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[ 2003. 12. 15 ]

조례 제27호

개정 2007. 11. 23 조례 제 264호  
일부개정 2015. 10. 30 조례 제 624호  
일부개정 2022. 2. 4 조례 제1026호  
(증평군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 
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)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,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·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11. 23, 2015. 10. 30, 2022. 2. 4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 10. 30>

1. “주민자치센터”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·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·복지·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.
2. “단체”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, 직능·자생단체, 취미·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원칙) 주민자치센터(이하 “자치센터”라 한다)와 주민자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0. 30>

1.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
2.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
3. 읍·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
4.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·재정 지원
5.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

## 제2장 주민자치센터

제4조(설치 등) ① 자치센터는 읍·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·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0. 30>

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“○○읍·면주민자치센터”또는 “○○주민자치센터”로 한다.

제5조(기능)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·복지·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 10. 30>

1. 지역문제 토론, 마을 환경 가꾸기,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
2. 지역문화 행사, 전시회,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
3. 건강증진, 마을금고,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
4. 회의장, 알뜰매장,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
5. 평생교육, 교양강좌, 청소년 교실 등 주민교육기능
6. 내집 앞 청소하기, 불우이웃 돕기,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

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·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0. 30>

③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0. 30>

제6조(시설 및 프로그램) ①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·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(이하 “시설 등”이라 한다)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5. 10. 30>

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,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·면장이 정하되 읍·면사무소별 특성,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.

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·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0. 30>

제7조(운영)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(이하“ 자치센터의 운영”이라 한다)은 읍·면장이 한다.

② 읍·면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.  
〈개정 2015. 10. 30〉

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·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 10. 30〉

제8조(자원봉사자) ① 군수와 읍·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.

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,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9조(강사)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〈개정 2015. 10. 30〉

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료 등)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, 읍·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, 수강료 등(이하 “사용료 등”이라 한다)을 징수할 수 있다

②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·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·면장이 징수하며,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징수한다. 〈개정 2015. 10. 30〉

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을 결정함에 있어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·면장이 정하며, 수강료의 경우는 읍·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. 〈개정 2015. 10. 30〉

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⑤ 읍·면장 또는 위원회는 자치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 10. 30〉

1. 사용료 : 각종 민간·직능 자생단체, 취미·동호회 등에서 공익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2. 수강료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

⑥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읍·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수입·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,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0. 30>

⑦ 읍·면장은 사용료의 징수·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수강료의 관리·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, 수강료의 징수·관리·지출 등은 위원회의 명의로 한다. <개정 2015. 10. 30>

제11조(이용 등)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 <개정 2015. 10. 30>

④ 읍·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0. 30>

⑤ 읍·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·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0. 30>

제12조(주민참여) ① 군수와 읍·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0. 30>

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·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·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3조(수당)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보고) ① 읍·면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

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0. 30>

② 읍·면장은 사용료 등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0. 30>

###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

제15조(설치) 읍·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·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.

제16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 <개정 2015. 10. 30>

1.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주민의 문화·복지·편익증진에 관한 사항
3.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
4.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. <개정 2015. 10. 30>

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0. 30>

제17조(구성 등) ①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 10. 30>

② 읍·면장은 해당 읍·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. <개정 2015. 10. 30>

③ 읍·면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, 언론계, 문화·예술계, 관계, 경제계, 일반 주민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

고,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0. 30>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 또는 증평군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0. 30>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해촉된 위원의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 10. 30>

제18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9조(간사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0. 30>

② 읍·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제20조(해촉) 읍·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해당 읍·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
2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4. 자치센터의 운영취지·목적·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5.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[전문개정 2015. 10. 30]

제21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·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읍·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10. 30]

제22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0. 30>

제23조(실비보상 등)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보칙 <신설 2015. 10. 30>

제23조의2(지원 및 포상 등) ① 군수는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 또는 선진지 견학,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따른 경비 지원과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, 청소년 공부방 지원, 자치센터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따른 경비 지원과 포상을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 10. 30]

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제목개정 2015. 10. 30]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 11. 23 조례 제26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 10. 30 조례 제62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2. 4 조례 제1026호, 증평군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